

# 사단법인 한국화학산업연구회 정관

2015년 7월 25일 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명칭)** 본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화학산업연구회(Korea Chemical Industry Research Group (KCIRG), 이하 "연구회"라 한다)라 한다.

**제2조 (목적)** 본 연구회는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발전과 관련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3조 (사무소 소재지)

본 연구회의 사무소는 연구회 창립시 서울시에 둔다. 단 회장단의 거주지에 따라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.

### 제4조 (사업)

본 연구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- (1) 학술 발표회, 강연회, 강습회의 개최
- (2) 학술지 및 도서의 출판
- (3) 연구 및 업적에 대한 시상
- (4) 화학산업관련 네트워크 구축
- (5) 국제 교류
- (6) 광고 등 홍보 사업
- (7)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

## 제2장 회원

### 제1조 (회원의 종류)

본 연구회의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, 단체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하며 본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이 된다.

### 제2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본 연구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규정에 정한 의무를 지며, 연구회의 학술활동과 학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선거권과 피선거권, 기타 권리를 갖는다.

### 제3조 (회원의 탈퇴)

본 연구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### 제4조 (회원의 징계)

회원의 제명 등 징계는 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른다. 징계 절차와 내용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.

## 제3장

### 제1조 (임원의 종류)

본 연구회에 회장 1인, 부회장 1인, 총무 1인의 임원을 둔다.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. 감사는 2인 이하로 한다.

### 제2조 (임원의 임기)

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임기 만료시까지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직 임원이 직무를 계속하며 빠른 시일 안에 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도록 한다.

### 제3조 (임원의 결원 시 총원)

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# 제4조 (회장 및 임원의 선출)

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
### 제5조 (회장의 직무)

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### 제6조 (부회장의 직무)
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.

### 제7조 (총무의 직무)

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재무를 담당한다.

### 제8조 (이사의 직무)

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### 제9조 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본 연구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과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과 이사회, 총회 및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한다. 또한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면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한다.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다.

## 제4장 총회

### 제1조 (총회의 의결 사항)

총회는 임원 선출, 정관 및 규정 변경, 예산 및 결산, 사업계획 및 기타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
### 제2조 (총회의 종류)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년 1회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### 제3조 (총회의 의결)

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#### **제4조 (의결권)**

회장 및 회원은 당사자 간의 법률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, 재산 및 금전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자와 본 연구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.

### **제5장 이사회**

#### **제1조 (이사회 구성 및 임기)**
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 및 제 위원장은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. 이사는 회장의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

#### **제2조 (이사회 역할)**

이사회는 업무 집행, 사업계획 운영, 예산과 결산서 작성,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#### **제3조 (이사회 의결)**

이사회 의사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전자 투표도 가능하다.

#### **제4조 (이사회 소집 및 의장)**

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### **제6장 운영위원회 및 제 위원회**

#### **제1조 (운영위원회)**

본 연구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를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. 본 운영위원회의 각종 의결은 이메일 등 전자 투표로 할 수 있다.

#### **제2조 (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)**

운영위원회는 연구회의 목적 달성과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해당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. 해당 위원회의 규정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

### **제7장 재정 및 회계**

**제1조 (수익금)** 본 연구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 총당, 사업 수익금, 보조금, 기부금, 광고비 등으로 총당한다.

#### **제2조 (채무 등)**

본 연구회는 연구회에 구속력이 될 수 있는 채무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
#### **제3조 (예산 및 결산 작성)**

본 연구회의 사업 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은 당해연도 2월까지 편성하고, 당해 연도 사업 실적 및 수지 결산서는 차년도 2월까지 작성한다.

### 제3조 (회계 연도)

본 연구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.

## 제8장 네트워크

**제1조 (네트워크)** 본 연구회는 사업 및 관련 개인 및 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용한다.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.

## 제9장 보칙

### 제1조 (정관 개정)

본 연구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 얻어야 한다.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.

### 제2조 (연구회의 해산)

본 연구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연구회가 해산될 경우, 그후 남아있는 연구회의 자산은 본 연구회와 관련된 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 단체에 전달한다.

### 제3조 (설립 발기인 및 임원의 임기)

1. 본 연구회 설립 발기인은 다음과 같다:

- 발기인 도춘호 (인)
- 발기인 이대수 (인)
- 발기인 허정림 (인)
- 발기인 김순식 (인)
- 발기인 김상헌 (인)
- 발기인 박현길 (인)
- 발기인 김학길 (인)

2. 본 연구회 설립 당시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:

- 회장 : 도춘호 (2017년 12월 31일)
- 부회장 : 이대수 (2017년 12월 31일)
- 감사 : 허정림 (2017년 12월 31일)
- 감사 : 김순식 (2017년 12월 31일)
- 총무 : 김상헌 (2017년 12월 31일)
- 이사 : 박현길 (2017년 12월 31일)
- 이사 : 김학길 (2017년 12월 31일)

### 제4조 (정관의 시행)

본 연구회의 정관은 감독 기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 <끝>